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형성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제명, 인용 표시,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

- 나. 기타 제명, 인용 표시, 약칭 등 수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, 제명, 인용표시, 약칭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4조제1호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)를 삭제함.
- 조례안 전체에서 제명, 인용표시, 약칭 등을 수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지난 '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「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를 발표하며 2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, 본 조례안과 연관된 사항은 ▲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에 관한 것임.
- 본 조례 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문 제1호는 “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”고 명시되어 있음.
- 한편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, 증거 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하도록 하게 하고 있으나, 본 조례를 적용하면 운임·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.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,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3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제명, 인용 표시,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
- 나. 기타 제명, 인용 표시, 약칭 등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4. 10. 10.~10. 30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”을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의 제1호다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”을 “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공무원여비규정”을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7조”를 “영 제1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17조제1항”을 “영 제1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24조제5항”을 “영 제2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27조”를 “영 제2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제29조제1항”을 “영 제2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별표 1”을 “영 별표 1”로 한다.
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는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구청장은 <u>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<u>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</u></p> <p>제4조(<u>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</u>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li> <li>2. <u>제17조, 제22조, 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</u></li> <li>3. <u>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li> <li>4. <u>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」 제4</u></li> </ol>	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-----            --- 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 <u>별표 1의 제1호다목</u> -----            --.</p> <p>② -----            ----- 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 -----.</p> <p>제4조(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의 <u>준용</u>) -----            ----- 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(이하 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을 <u>준용하되, 영</u>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2. <u>영 제17조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3. <u>영 제17조제1항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4. <u>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무원용 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는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</u></p>

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
5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
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7.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 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

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
5. 영 제24조제5항 -----  
-----  
-----.

6. 영 제27조-----  
-----.

7. 영 제29조제1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8. 영 별표 1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  
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 
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 
공무원”으로 본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